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0

발의연월일: 2020. 6. 24.

발 의 자:김미애・김 웅・태영호

황보승희 · 지성호 · 전주혜

박 진 · 강대식 · 신원식

전봉민 · 김도읍 · 곽상도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역시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,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(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) 피선거권을 18~21세로 정하고 있으며, 독일 등 실제 다수의 20대 초반 청년들이 선거를통해 선출되어 훌륭하게 정치활동을 다수 이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48년도 최초 정한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하며 합리적 이유없이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.

이에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 1세로 낮추고자 함(안 제16조제2항·제3항). 법률 제 호

#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"25세"를 각각 "21세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피선거권) ①(생 략)	제16조(피선거권) ①(현행과 같
	승)
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	② <u>21세</u>
의 피선거권이 있다.	
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	3
이상(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	
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	
는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	
계속하여 選擧日까지) 해당 지	
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	
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	
<u>25세</u>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	<u> 21세</u>
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	
의 피선거권이 있다. 이 경우 6	
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	
의 설치·폐지·분할·합병 또는	
구역변경(제28조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	
한다)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	
한다.	